



DONG WON

ESG

인권헌장

1

2

문서번호

DIS-ESG-S08

제 정

2021.03.01

개정번호

0

동원산업(주) 인권헌장

제 1 조(차별금지) 모든 임직원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 또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한다.

제 2 조(근로조건 준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제 3 조(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4 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 및 연소자의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 5 조(산업안전 보장)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 6 조(고객 인권 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정보의 유출이나 누출이 없도록 높은 수준의 보안체계를 항시 유지합니다. 또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제 7 조(신고 제도)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신고인)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개별 신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 등은 인권침해 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또한,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신고와 관련되어 있는 임직원 등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해야 하며, 피해자, 피해내용, 구제절차, 처리결과 등 신고, 접수, 통보 내용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 또는 인권 리스크를 알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인권침해 신고 채널

- 부서명: 총무부
- 이메일: gcs@mydw.co.kr
- 전화: 031-599-8933
- 팩스: 031-491-3793
- 우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141 번길 47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